

대전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가단1381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윤현진, 석윤수

피 고 1.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판기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이상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현옥

변론 종결 2021. 1. 21.

판결 선고 2021. 2.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이 에 2019. 1. 17.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회사는 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C 사이에 2018. 1. 1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회사는 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7. 11. 30.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017. 11. 30. D 주식회사 E지점(이하 'D은행'이라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보증일자	대출은행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2017. 11. 30.	D은행	F	2020. 11. 27.	1,000,000,000원

나. D은행은 2019. 4. 8. C의 이자연체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사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9. 4. 18. D은행에 합계 1,009,143,0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은 2019. 1. 17. 피고 회사에게 C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1. 17.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2018. 1. 17.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C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대략 1,732,951,800원이었는데, C은 당시 원금만 약 1,000,000,000원에 달하는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금채무와 함께 140,00,000원에 달하는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D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1,200,000,000원 등 합계 1,791,967,31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9. 4. 2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청주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2020. 3. 27. 실제 배당할 금액 1,405,814,179원 중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50,000,000원을, 피고 B에게 9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의 배당금채권처분금지가처분(대전지방법원 2020카단50693)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아직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의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가 D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H에 대한 채권이 있어 H으로부터 C이 발행한 각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피고들이 교부받은 전자어음이 만기일에 지급이 거절되자 C과 지급 거절된 전자어음과 관련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각 전자어음과 관련하여, 을가 제1 내지 1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① 피고 회사는 2018. 11. 15. H(I, J의 실질적 운영자)으로부터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¹⁾ 중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인 C, 발행일자 2018. 11. 4., 만기일 2019. 1. 15., 제1배서인 K 주식회사, 제2배서인 H(J)로 하는 액면가 100,000,000원의 전자어음(이하 '제1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배서·교부받았고, ② 피고 회사는 2018. 11. 23.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1전자어음을 배서·교부하였는데, ③ L은 2019. 1. 15. 피고 회사에게 제1전자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통보를 하였고, ④ C은 피고 회사에게 제1전자어음을 회수하여 주면 5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빠른 시일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며, 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9. 1. 16. L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제1전자어음을 회수하였고, ⑥ C은 2017. 1. 17. C의 대표이사 O 명의로 피고 회사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① 피고 B은 H으로부터 H에 대한 공사대금,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인 C, 발행일자 2018. 11. 4., 만기일 2019. 1. 15.,로 하는 액면가 100,000,000원의 전자어음(이하 '제2전자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만기일인 2019. 1. 15. 제2전자어음이 지급 거절되었고, ② C은 피고 B에게 제2전자어음의 액면가 10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0,000,000원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며, ③ 피고 B은 2019. 1. 경 C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9. 1. 17. C과 나머지 90,000,000원에 관하여 2019.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4) 앞서 든 증거, 위 3)항과 같은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H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C이 발행한 각 전자어음을 배서·교부받았다가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이 지급거절되자 발행인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전자어음과 관련된 채권을 담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각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이전까지 피고들이 C와 직접적인거래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 혹은 피고들에게 C이 발행한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을 배서·교부한 H이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의 발행인 C의 구체적인 신용상태나 재산상황을 알 수 있을 만한 특별한 관계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인 1,732,951,8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저당권자 D은 행, 채권최고액 각 540,000,000원, 660,000,000원의 제1, 2순위 근저당권만이 설정되어있었던 점(피고들 또한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제1, 2순위 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의 합계를 상회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의 지급거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피고 B은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으면서 남은 돈도 빠른 시일 내에 변제받기로 하고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위 2)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C의 채무초과 등 재산 상태에 관하여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우성

1) 다만, 피고 회사의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M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피고 회사의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N의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까지 포함한다.